

 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7월 2일(화) 국무회의 시작(시간 추후 문자공지) 이후	
배 포 일	2019. 7. 1. / (총 4대)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과 장	김 기 남	전 화	044-202-2510
담 당 자	박 나 연		044-202-2505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기존)

구분	지급 비율*
1급	100분의 100
2급	100분의 85
3급	100분의 70
4급	100분의 55
5급	100분의 40
6급	100분의 25



(개정)

구분	지급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55

* 지급 비율의 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임('19년 기준 4억1800만 원)

□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 참고 > 1.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장애인일시보상금 보상절차
2.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19.7.1)

< 별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고1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장애인일시보상금 보상절차

□ 피해보상신청 절차

- (신청자)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보상의 신청 등에 규정된 신청서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의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장애등급을 받기까지의 의무기록사본 및 기타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보건소) 시도 역학조사관의 기초피해조사를 위해 과거 예방접종력, 예방접종예진표, 백신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서류(국가출하승인서, 백신 냉장고점검표 등)등을 구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시도 제출

□ 피해조사 절차

- (시도역학조사관) 보상신청자 및 보건소에서 구비된 서류를 토대로 피해발생 경위, 주요검사소견,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이상유무 등 기초조사 실시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시도역학조사관의 기초조사 1차 평가, 미비한 사항 추가 역학조사 및 관련학회 자문요청 등 조사사항 보완

*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

□ 피해보상 심의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초역학조사사항을 바탕으로 임상경과 및 진단을 확인하고, 의학적 판단 및 문헌 검토를 거쳐 보상여부 결정

* 당면직 2명(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포함하여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예방접종 실시경험이 풍부한 임상 의사,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보상금 지급

- (질병관리본부) 피해보상 심의결과 장애인일시보상금 보상 결정된 신청자에 한해 장애인일시보상금 지급

참고2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사항('19.7.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현행	개정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u>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u> 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u>장애의 정도</u>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 (2019.6.4. 공포, 2019.7.1. 시행)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u>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u> 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장애등급</u> 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u>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별표 1</u> 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장애 정도</u> 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1] 각 장애인의 종류별로 제1급~제6급까지 등급기준을 규정	[별표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등급 체계로 규정